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단53362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이민호, 이현우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2020. 12.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이 2022.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년

금제1949호로 공탁한 898,892,02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16. 5. 30. 1억 6,000만 원을 이율 연 3.37%(고정금리), 대출만기일 2017. 5.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20. 4. 17. 8,100만 원을 이율 연 7.49%(고정금리), 대출만기일 2021. 4. 16.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이후 위 2016. 5. 30.자 대출약정의 대출만기일은 몇 차례 연장을 통해 2021. 5. 14.이 되었다.

2) C가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47759), 2021. 8. 9. 'C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47,590원 및 그 중 14,879,56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76,211,988원 및 그 중 74,332,1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1. 11. 10.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1) C는 2020. 12. 22.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으나 이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20. 1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금포등기소 2020. 12. 23. 접수 제16273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1)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0. 채권최고액 4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21. 7. 15.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22. 7. 21. 매각되었고, 2022. 9. 6.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98,889,56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대한민국은 2022. 9. 7.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916 근저당권가처분 등이 있다는 이유로 배당금 및 이자 합계 898,892,023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년 금제1949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C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G1) (이하 'G'라고 한다)에게 납품하는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 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가 사업의 계속적 추진에 필수적인 피고와의 거래를 유지하고 피고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를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보이므로,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는 2014. 5.경 G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G에 TV, DVD 플레이어, 사운드 바 등의 전자기기를 납품하여 왔는데, 위 물품들은 모두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물품들로, G가 C에게 물품을 발주하면, C는 피고에게 G의 발주서를 첨부하여 물품을 발주하고,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G에게 납품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대금은 피고가 우선 C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이후 C가 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정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결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 201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C의 총 매출액 중 G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의 사업에 있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G와의 거래는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거래였고, 따라서 G에 대한 물품 공급의 전제가 되는 피고와의 거래 또한 회사의 존립에 직결되는 거래관계였다고 보인다(이와 같은 거래구조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피고의 C에 대한 매출액이 위 사업연도별 C의 매출원가의 90%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업연도	총 매출(A)	G에 대한 매출(B)	공급 횟수	비율(B/A×100)
2014	1,685,283,791	870,272,514	4	51.64
2015	9,647,919,556	9,110,566,156	28	94.43
2016	10,303,262,489	8,775,291,055	25	85.17
2017	12,116,105,341	10,947,737,541	19	90.36
2018	12,662,102,877	12,060,980,467	70	95.25
2019	16,808,758,628	14,012,106,810	83	83.36
2020	17,102,286,786	15,966,946,786	82	93.36

3) C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누적 외상미수금은 2020. 12. 9. 피고가 TV 10차 발주물량을 공급하면서 2,982,846,126원에 달하였으며, 이후 2020. 12. 16. 및 2020. 12. 17. 9차 공급물량에 대한 대금이 일부 결제되어 2020. 12. 17. 외상미수금 잔액이 2,222,702,299원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의 C에 대한 매출은 2014년 9억 8천만 원 정도로 시작하여, 2015년에는 80억 원을 상회하였고, 2018년부터는 100억 원, 2020년도에는 160억 원을 각 상회하는 등 크게 증가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내부적으로 C에 대한 채권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었고, 상장회사로서 외부감사에서 대응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C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와 사이에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온 반면, 외상거래 구조는 계속 유지되었고 C의 외상미수금이 2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경영상 판단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의 대표이사 D도, 피고가 수년 전부터 물품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담보 설정 등을 요구하여 왔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로서는 거의 유일한 사업인 G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계속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경영상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리라 보인다.

5) C는 2020. 11. 23. 피고에 대하여 G 납품용 TV 2020년 11차분 합계 미화 1,360,945달러 상당의 물품을 발주하였고, 2020. 12.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인 2021. 1. 15. 피고로부터 748,723,89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C가 피고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 외에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외상미수금은 특정 회차의 물품대금이 아니라 장기간 이루어진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일부 부족한 결제금액들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30억 원으로 다액이나, 2020. 12. 17. 외상미수금 잔액이 2,222,702,299원에 이르고, C와 피고 사이의 2020년 거래내역을 보면 1회 발주당 거래금액이 약 15억 원가량의 규모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미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그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인다.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피고는 C에 2021. 1. 15. 748,723,89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준 이후 추가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G가 정책 변경으로 그 동안 지점에서 발주하여 오던 전자기기의 발주권한을 G 본사로 이관하기로 한 탓으로, C는 이후 수개월 동안 본사를 통한 C 제품의 발주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결국 거래 종료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2021. 5.경 피고와의 거래도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가 알았거나 예측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성희

목 록

1. 경기도 김포시 H 대 8,437㎡
2. 경기도 김포시 I 도로 337㎡
3. 경기도 김포시 J 임야 29,305㎡
4. 경기도 김포시 K 임야 3,438㎡
5. 경기도 김포시 H, L, M N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O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식물관련시설
1층 1,183.91㎡
6. 경기도 김포시 P Q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R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66.94㎡
7. 경기도 김포시 P S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R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38.5㎡
8. 경기도 김포시 P T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R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34.96㎡

9. 경기도 김포시 P U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R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16.79㎡. 끝.

1) 전 세계 미군기지에 있는 미군 및 군무원을 상대로 한 판매점을 총괄하는 미 육·공군 복지지원단이다.